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09

발의연월일: 2023. 2. 14.

발 의 자:전해철·박완주·김민기

황 희·김민석·정태호

이동주・박 정・임종성

양기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 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이에 각 사업장은 업종별로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고 있음.

그런데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장 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관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장 내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한영풍 석포제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러한 사업장에도 통합허가를 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종전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4항"을 각각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 학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합허가) ① ~ ③ (생	제6조(통합허가)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
	치・운영하면서 환경오염을 예
	방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그 이
	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
	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
	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
	건을 붙여야 한다.
<u>④</u> ~ <u>⑨</u> (생 략)	<u>⑤</u> ~ <u>⑩</u> (현행 제4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7조(허가기준 등) ① (생 략)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현행과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제6조제4항</u>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 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 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같음)
②
제6조제5항
3
제6조제5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의 변경) ①
<u>같은 조 제3항·제4항</u>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 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 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 기 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 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제2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1. ~ 4. (생 략)
- 5. <u>제6조제3항</u>에 따른 허가조건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 15. (생략)
- ② ~ ④ (생 략)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_
	_
	-
	-
	-
	-
	-
	-
	-
	_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제3항 · 제4항	
C 1F /퀴레키 키 ()	
6.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 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6조제4항</u>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 3. ~ 5. (생략)
- ② · ③ (생 략)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 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 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한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 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 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 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u>제6조제5항</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 1. (생략)
- 2. 허가배출기준 및 <u>제6조제3항</u> 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의2. ~ 6. (생략)

② ~ ④ (생 략)

- 제32조(기록·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6조제3항</u>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1. <u>제6조제3항</u>에 따른 허가조건
 을 위반한 자
 - 2. (생략)
 - ② ~ ⑦ (생 략)

	1. (현행과 같음)
6조제3항	2제6조제3항
적정성	<u>• 제4항</u>
	2의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자는 다	제32조(기록·보존)
경부령으	
기록・보	
	1. (현행과 같음)
허가조건	2. <u>제6</u> 조제3항 · 제4항
각 호의	제47조(과태료) ①
: 자에게	
과태료	
	<u>.</u>
허가조건	1. <u>제6조제3항 • 제4항</u>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